의안번호	2203143
의 뢰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4. 11. 6.
추계번호	24F3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인상 –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상속세 일괄공제 등을 인상함에 따라 상속세는 2025년 2,856억원, 2029년 5,712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조 5,704억원 (연평균 5,1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일괄) 인상과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일괄) 상향조정 (안 제19조제4항)		추	정	곤	란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조정 (안 제21조제1항)	−2,856	−5,712	−5,712	−5,712	−5,712	−25,704	−5,141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 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안 제24조 단서)		추	정	곤	란		
합 계	−2,856	−5,712	−5,712	−5,712	−5,712	−25,704	−5,141

주: 2025년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감안하여 6개월분 반영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제4항(배우자상속공제: 일괄)	○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일괄) 상향조정 – 배우자상속공제액(일괄): (현행) 5억원 → (개정안) 7억 5천만원	
2	안 제21조제1항(일괄공제)	○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 – 일괄공제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7억 5천만원	

3	안 제24조 단서(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의 상향조정 – 상속세 과세가액: (현행) 5억원 초과 → (개정안) 7억 5천만원 초과	
4	안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 –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현행) 5억원 이하 → (개정안) 7억 5천만원 이하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 상향조정시 상속세의 세수변화가 없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제4항(배우자상속공제: 일괄)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1조제1항(일괄공제)	○	
3	안 제24조 단서(공제 적용의 한도)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	○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상속세의 세수 변화가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2025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감안하여 6개월분 반영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일괄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93.3%)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실효세율은 기초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며,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이외에도 개정안은 배우자상속공제(일괄)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

○ 향후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일괄)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개정안 7억 5천만원)을 적용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의 재산상속 여부 및 상속재산 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향후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액의 일정금액을 초과(현행 5억원 초과, 개정안 7억 5천만원 초과)한 경우 적용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별 상속공제액 및 유증 등 상속재산 차감 항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상속공제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현행 5억원 이하, 개정안 7억 5천만원 이하)은 동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상속세 증감 없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①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②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일괄공제 적용을 받음

○ 배우자공제의 경우 일괄공제와 병행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액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 일괄공제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7억 5천만원

나. 추계방법

❑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일괄공제 적용대상자의 일괄공제 조정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일괄공제액 적용대상 피상속인을 기초로 각 상속재산 규모별 기초공제 적용대상자를 추정한 후 기초공제액에 각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1)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를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93.3%)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의 증감은 일정하지 않으며, 평균 비율은 93.3%을 나타내고 있음

[표 2]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A)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B)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비율(B/A)
2019년	8,357	7,796	93.3%
2020년	10,181	9,507	93.4%
2021년	12,749	11,883	93.2%
2022년	15,760	14,717	93.4%
2023년	19,944	18,609	93.3%
연평균비율	-	-	9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연평균 336,365명) 중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3,398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도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연평균 비중(4.0%) 적용

[표 3]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피상속인수	과세 피상속인수	과세미달 피상속인수
2019년	345,290 (100.0)	8,357 (2.4)	336,933 (97.6)
2020년	351,648 (100.0)	10,181 (2.9)	341,467 (97.1)
2021년	344,184 (100.0)	12,749 (3.7)	331,435 (96.3)
2022년	348,159 (100.0)	15,760 (4.5)	332,399 (95.5)
2023년	292,545 (100.0)	19,944 (6.8)	272,601 (93.2)
연평균인원 / 연평균 비중 인원 등	336,365 (100.0)	13,398 (4.0)	322,967 (96.0)

주: ( )는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2025년 이후 12,502명으로 가정하여 추계

- 위에서(표3) 추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13,398명에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93.3%)을 반영하여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비율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피상속인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일괄공제 피상속인수비율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 28.7%에서 500억원 초과 0.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4]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 대상 피상속인수 및 비율

(단위: 명,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10억원 이하	2,220 (28.5)	2,878 (30.3)	3,363 (28.3)	4,149 (28.2)	5,219 (28.0)	28.7
20억원 이하	3,299 (42.3)	4,107 (43.2)	5,247 (43.5)	6,506 (44.2)	7,838 (42.1)	43.2
30억원 이하	1,112 (14.3)	1,190 (12.5)	1,558 (13.1)	1,924 (13.1)	2,574 (13.8)	13.4
40억원 이하	452 (5.8)	477 (5.0)	628 (5.3)	774 (5.3)	1,189 (6.4)	5.5
50억원 이하	201 (2.6)	240 (2.5)	336 (2.9)	422 (2.8)	602 (3.2)	2.8
100억원 이하	359 (4.6)	415 (4.4)	491 (4.2)	633 (4.1)	783 (4.2)	4.3
500억원 이하	142 (1.8)	188 (2.0)	241 (2.0)	288 (2.0)	369 (2.0)	2.0
500억원 초과	11 (0.1)	12 (0.1)	19 (0.2)	21 (0.2)	35 (0.2)	0.2
합계	7,796 (100.0)	9,507 (100.0)	11,883 (100.0)	14,717 (100.0)	18,609 (100.0)	100.0

주: ( )는 전체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 수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수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의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10.8%에서 500억원 초과 43.1%로 나타남

[표 5]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 추이

(단위: 억원,%)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실효세율
	과세표준액(A)	총결정세액(B)	실효세율(B/A)	과세표준액(A)	총결정세액(B)	실효세율(B/A)	과세표준액(A)	총결정세액(B)	실효세율(B/A)	과세표준액(A)	총결정세액(B)	실효세율(B/A)	과세표준액(A)	총결정세액(B)	실효세율(B/A)	
10억원 이하	417,955	40,507	9.7	518,653	56,094	10.8	640,338	70,788	11.1	805,131	94,658	11.8	10,748	1,144	10.6	10.8
20억원 이하	15,097	2,520	16.7	18,163	3,087	17.0	24,060	4,186	17.4	29,312	5,134	17.5	35,192	6,122	17.4	17.2
30억원 이하	12,122	2,744	22.6	13,089	3,019	23.1	17,512	4,071	23.2	21,315	5,105	24.0	28,858	6,754	23.4	23.3
40억원 이하	8,052	2,140	26.6	8,405	2,200	26.2	11,538	3,112	27.0	14,398	3,926	27.3	21,632	5,903	27.3	26.9
50억원 이하	5,017	1,425	28.4	5,841	1,725	29.5	8,400	2,446	29.1	10,558	3,199	30.3	15,424	4,622	30.0	29.5
100억원 이하	15,421	5,155	33.4	17,290	5,792	33.5	21,070	7,375	35.0	26,975	9,323	34.6	33,984	11,735	34.5	34.2
500억원 이하	18,835	7,083	37.6	26,036	10,485	40.3	33,592	13,727	40.9	38,323	15,618	40.8	51,370	20,647	40.2	40.0
500억원 초과	16,782	5,854	34.9	33,103	15,128	45.7	31,267	12,834	41.0	314,285	148,957	47.4	142,281	65,870	46.3	43.1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상속재산규모별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2.5억원=7.5억원−5억원)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5년 기준 5,712억원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각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증가액(2.5억원)에 실효세율(표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수감소액은 10억원 이하 967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20억원 등 총 5,712억원으로 추계됨

다. 추계결과

❑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5년 2,856억원, 2029년 5,712억원 등 5년간 총 2조 5,704억원(연평균 5,1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대상 및 일괄공제액 적용대상자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적용대상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6] 향후 5년간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액	2,856	5,712	5,712	5,712	5,712	25,704	5,141

주: 2025년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감안하여 6개월분 반영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